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**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**

1. 전자관보 제19640호(2019.12.3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”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= 아 래 =

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

1차 위반	50만원
2차 위반	100만원
3차 위반	150만원

붙 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19 - 320 호 (2019.12. 06) 접수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)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